

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6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년 9월 일
제 출 자: 중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※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:2006. 9. 27(시행일:2007.9.28)

2. 주요내용

-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(안 제3조제1항)
 - 전부 제한지역 : 주거지역, 상업지역
 - 일부 제한지역 : 전부 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
- 가축사육 허가(안 제3조제3항)
 -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
-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(안 제3조제5항)
 - 학습·시험용, 진료 또는 인공수정, 애완용·방범용 가축
- 가축사육 허가 취소(안 제4조)
 - 조치이행명령 불이행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
 -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시, 사육시설을 철거한 경우

3. 조례안 : 붙임

4. 근거법규
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(2008. 5. 26 ~ 6. 16)

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축” 이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·돼지·말·닭·젖소·오리·양·사슴 및 개를 말한다.
2. “가축사육”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배출시설” 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·운동장·착유실·먹이방·분만실을 말한다.

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)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.

- 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(이하 “허가”라 한다)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·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
 2. 수의사·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
 3. 애완용·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
-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허가취소 등) ①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
3. 허가를 받은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 시설을 철거한 경우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울산광역시중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.
- ③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별표]

가축사육 제한지역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해 당 지 역
전부 제한지역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다음의 지역 1. 주거지역 2. 상업지역
일부 제한지역	전부 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

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8조 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2. 「수도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3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(이하 "제한구역"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64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9. 9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08. 9. 16(화)
- 위원회상정 : 2008. 9. 23(화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(안 제3조제1항)
 - 전부 제한지역 : 주거지역, 상업지역
 - 일부 제한지역 : 전부 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
- 가축사육 허가(안 제3조제3항)
 -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
-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(안 제3조제5항)
 - 학습·시험용, 진료 또는 인공수정, 애완용·방범용 가축

○ 가축사육 허가 취소(안 제4조)

- 조치이행명령 불이행, 거짓 ·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
-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시, 사육시설을 철거한 경우

4. 근거법규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방영환)

- 본 조례안은 「오수 ·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「울산광역시중구오수 · 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」에서 규정되어 있던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정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「오수 ·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된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다만,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제한지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①주거지역 ②상업지역으로 명시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규정을 따를 경우, 기존 자연 녹지지역에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 역으로 용도변경된 풍암, 성동지구 등 7개 자연부락에서는 가축사육이 전면 제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보아지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수정가결사항

제정안	수정안
<p>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)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신설) <p>⑥(생략)</p>	<p>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) 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⑤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풍암, 성동, 길촌, 주연, 내약지역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인으로 사육하는 가축</p> <p>⑥(제정안과 같음)</p>